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교육 및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구분은 연구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퇴직기금, 기타기금으로 하되, 각 단위부서의 발전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기금의 사용 및 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등) ①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사무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